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김종필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3년 2월 28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3월 3일

3. 제안이유

소방활동 중 사망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예우 강화를 위한 장례비용 지원사항 등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장례식의 종류 중 ‘충청북도장(葬)’을 ‘충청북도청장(葬)’으로 변경함(안 제4조)

나. 조문명칭을 변경하여 장례의 범위와 기간을 규정함(안 제5조)

다. 가족장으로 장례가 집행된 후 소요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5. 검토내용

- 본 개정안은 현행 ‘장례 비용 지원’만을 명시한 조문을 ‘장례범위 및 장례기간’으로 개정하여 장례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하고
- ‘장례비용’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

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임.

- 이 조례는 관계법령인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법령에서 부여된 여건 조성, 시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<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>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.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- 조례안 예고('23. 3. 8. ~ '23. 3. 14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소방활동 중 사망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예우 강화를 위한 장례비용 지원사항 등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